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8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11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8. 11. (목)	담당부서	기업정책팀
담당과장	허정수 팀장 (044-203-4830)	담 당 자	윤영범 사무관(044-203-4831)

『기업활력제고특별법』 드디어 시행!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8. 13.(토) 『**기업활력제고특별법**(이하 「기업활력법」)』이 **본격 시행한다고** 밝혔다.

○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**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**에 **신청**하면 된다. (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)

○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**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**한다.

※ 사업재편계획 **신청절차**, **신청서류** 등 세부사항은 **산업부**(기업정책팀: ☎ 044-203-4831), **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**(☎ 02-6050-3831~6)에 **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**(www.oneshot.or.kr)를 **참조**

【별첨 1】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·승인업무 처리절차도 참조

□ 이번에 발효되는 **『기업활력법』**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**기업들의 자발적·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**로서,

【별첨 2】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 참조

❶ **상법·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**해 주고,

❷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**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**하여 **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**해 줌은 물론,

● **자금, 연구개발(R&D), 공정혁신,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**하고 있다.

【별첨 3】 기업활력법 지원 내용

□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**일본,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**이며 **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.**

○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, **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·중견기업이 48%를 차지**하고, 승인기업의 **약 70%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**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.

【별첨 4】 주요국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 참조

□ 산업부는 **글로벌 경기침체**와 **구조적 공급과잉**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**글로벌 경쟁력을 강화**하고, **새로운 성장동력(Cash-cow)을 창출**해 나가길 바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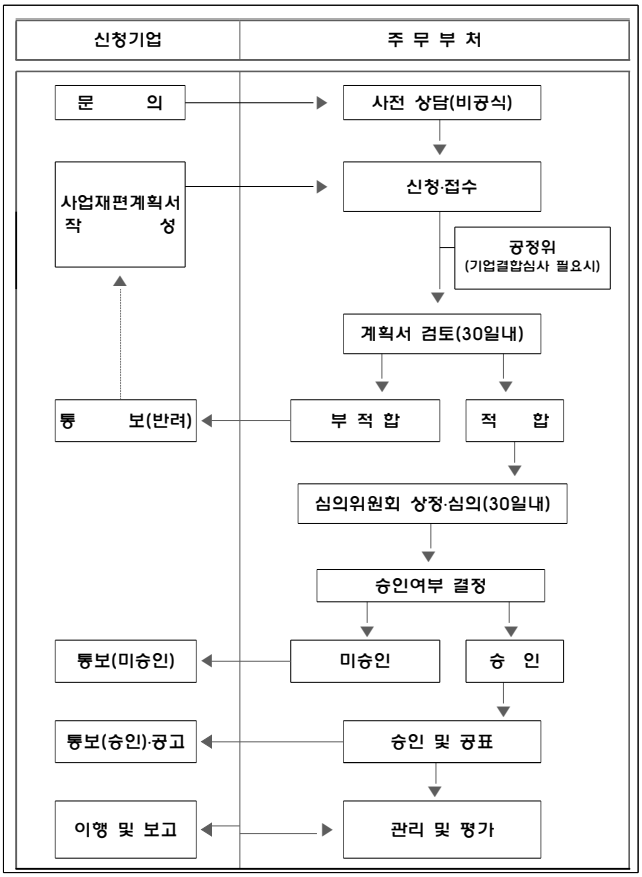
○ 정부도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**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**(Best practice)**을 지속 발굴·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**

□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**전담기관을 지정**하고,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한 **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**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장(☎044-203-4830), 윤영범 사무관(☎044-203-48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·승인업무 처리절차도



참고 2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

□ 현행 법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**사후적 구조조정**만 지원하며, **선제적 사업재편**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

구 분	사업재편	구조조정	
특 징	**선제적·자율적 구조조정**	사후적·타율적 구조조정	
적용법률	**기업활력법**	기촉법	통합도산법
대상기업	**과잉공급분야 정상기업**	부실징후기업	부실기업
추진체계	**기업자율 (주무부처·심의위원회)**	채권금융기관 (자율협약·워크아웃)	법 원

□ 부실 발생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, 실업 발생 등 **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**

○ 과잉공급 해소,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**부실화를 사전에 차단**하고, 우리 **산업의 경쟁력을 제고**할 필요

참고 3 **기업활력법 지원 내용**

1 「상법」상 절차간소화 특례 적용

○ (**소규모분할**) **자산규모 10% 미만**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**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**하는 **소규모분할 도입**

○ (**소규모합병**) 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**소규모합병 적용범위 확대**

* (상법) 합병을 위해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%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→ (기활법) 20% 이하까지 확대

○ (**간이합병**)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**간이합병 적용범위 확대**

* (상법)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%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→ (기활법) 80% 이상까지 확대

○ (관련 절차기간 단축) 주총 소집통지 기간(**2주 전 → 7영업일 전**), **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(20일내 → 10일내) 등**

2 「공정거래법」상 지주회사·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등 완화

○ (**지분비율**)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**특정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**시, **계열사 지분*** **의무취득 규제를 3년간 적용유예 연장**

○ (**공동출자**) 동일 지주회사내 **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**하는 **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**

○ (**증손회사**) **증손회사 보유 금지**(지분 100% 보유시에만 예외적 허용)하는 **규제를 3년간 적용유예**(50% 이상)

○ (**출자**) 대기업집단(상호출자제한·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)의 **순환·상호출자 금지** 규제의 **유예기간을 6개월 → 1년으로 연장**

○ (**채무보증**) 대기업집단내 기업간 **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**

3 사업재편시 일시적 유동성 압박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

○ **보유자산 매각**으로 **금융채무 상환**시, **최대주주**가 **주식 전부를 상호교환**시, 합병 후 **중복자산 매각**시 **양도차익 과세이연**

○ **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시, 주주 등이 무상증여자산 매각후 금융채무 상황시 채무면제 이익 과세 이연**

○ 합병·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**등록면허세 50% 감면**

○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%→70%로 적격합병 기준 완화

○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보유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 제외

○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 확대

4 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진출시 '규제특례제도'로 지원

○ (**그레이존 해소**) 신산업 분야에 **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가 사전에 확인** → 신산업 진출시 불확실성을 완화

* (일본 예) 환자 스스로 채혈하는 것이 의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 → 합법임이 확인되면서 혈액검사키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

○ (**기업이 규제개선을 제안**)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 **기업이 효율적 대안을 제안**시, 주무부처 검토 후 **해당 규제를 완화**

* (일본 예) 가스용기 안전검사시 기존 파괴검사를 초음파를 통한 비파괴검사로 대체 요청 → 주무부처가 승인, 안전검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하루로 단축

5 전용자금(2.7조원)을 포함 총 8.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

○ 사업재편시 M&A, 설비 증설·운영 등을 위해 승인기업 전용 **투·융자 지원자금**(2.5조원, 산은), **우대보증**(2천억원, 신보) 신설

○ **신산업 진출**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**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**(1조원, 산은), 시설투자촉진펀드(1.5조원, 기은)을 통해 우선 심사·지원

6 연구개발 지원, 고용안정 지원 등

○ **철강·조선·석유화학** 등 주력 제조업(산업부R&D 2조원)을 비롯해 각 부처 업종별 **R&D 사업**에 **우대가점** 지원(미래부 R&D 규정 개정, '16.下)

○ 신산업 M&A는 **신산업육성펀드**(3천억원)**, 전력신산업펀드**(2조)를 활용·지원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**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**시 **인건비** 지원 우대

○ 퇴직이 불가피한 중복·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·휴직·훈련시 **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**하고, 근로자의 전직·재배치 훈련시 **훈련비 지원 확대**

○ **사업재편** 기업 **실직자**에 대한 **재취업 패키지 지원**, **생계안정** 지원

7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자금, R&D, 해외마케팅 등 지원

○ **中企 정책자금**(3.5조원)**을 우선 지원하고** 융자제한 완화, 기업당 **대출한도 확대**

○ **중기청 R&D사업** 평가시 **사실상 지원받도록 우대**

○ **월드클래스300, 스마트공장** 사업에 **우대 지원**하고, **해외 마케팅 지원, 맞춤형 컨설팅**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 유도

< 기활법 지원내용 종합요약표 >

분야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
상법	▪ 소규모분할 도입	▪ 자산규모 10%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
	▪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	▪ 합병으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%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→20% 이하까지 확대
	▪ 간이합병 범위 확대	▪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%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→80% 이상까지 확대
	▪ 주총기간 단축	▪ 주총 소집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로 단축
	▪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	▪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시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(입증 못할시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)
	▪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	▪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,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* * (상장) 1개월→3개월, (비상장) 2개월→6개월
공정거래법	▪ 부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	▪ 지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특정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 계열사 지분의 의무적 취득기간을 1~2년에서 3년으로 연장
	▪ 공동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~2년에서 3년으로 연장
	▪ 증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지분 100%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~2년에서 3년으로 연장
	▪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·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	▪ 채무보증 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	▪ 기업결합심사 합리화	▪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,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
세제	▪ 양도차익 과세 이연	▪ 보유자산 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시, 자산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
		▪ 최대주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전부를 상호교환시,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(계열사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포함)
		▪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

세제	▪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	▪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, 자회사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
		▪ 주주 등이 무상 증여한 자산을 매각하여 금융채무 상환시,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
		▪ 금융기관이 채무 면제시,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
	▪ 등록면허세 과세 이연	▪ 합병·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% 감면
	▪ 적격합병요건 완화	▪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%→70%로 적격합병 기준 완화
		▪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보유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 제외
규제 불확실성 해소	▪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	▪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청 가능
	▪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 개선 요청	▪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
자금	▪ 8조 7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	▪ 투·융자 지원자금(2.5조원, 산은), 우대보증(2천억원, 신보) 등 승인기업 전용 2조 7천억원 자금 신설
		▪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(1조원, 산은), 시설투자촉진펀드(1.5조원, 기은)를 통해 우선 심사·지원
연구 개발	▪ 효율성 제고, 新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확보 지원	▪ 각 부처 업종별 R&D 사업에 우대가점 지원
		▪ 신산업육성펀드(3천억원), 전력신산업펀드(2조원)를 활용·지원
		▪ 중소·중견기업이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우대
고용 안정	▪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	▪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훈련비 지원 확대
		▪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패키지 지원, 생계안정 지원
중소 중견	▪ 중소·중견기업 대상 특별 지원패키지 마련	▪ 中企 정책자금(3.5조원)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제한 완화,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
		▪ 중기청 R&D사업 평가시 사실상 지원받도록 우대
		▪ 월드클래스300, 스마트공장 사업에 우대 지원하고, 해외 마케팅 지원,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 유도

참고 4 주요국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

1. 다우케미칼·듀폰 합병 사례 (미국)

□ (**개요**)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달러화 강세로 농업부문에서 매출 증가가 둔화되고 신흥국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악화에 대응하여,

○ 미국 1, 2위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하여 다우듀폰을 설립('15년)하고 합병이후 3개*의 독립 상장법인으로 분사 계획

* (농업) 종자, 비료 사업 (소재과학) 범용·고기능 화학제품 (특수제품) 고기능 수지

○ 분사된 회사는 해당분야에 대해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

□ (**기대효과**) 글로벌 화학 업체 중 2위 업체로 규모가 확대되어, 합병에 따른 비용 감소,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기대

2.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의 분할합병 사례 (일본)

□ (**개요**)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·통합, 신설법인 설립('14.1)

○ 가스터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량 확충, 양사 해외시장 판로를 통합*하여 글로벌 수요망 확대 추진

* (미쓰비시) 동남아·중동시장 판로 + (히타치) 유럽·아프리카시장 판로

□ (**기대효과**) 통합법인 설립으로 지멘스, GE에 이어 발전사업부문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, 세계 1위의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 기대

3. 일본 산업경쟁력법 운영 성과(전경련, '15.10월)

□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 수

○ '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90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, 연평균 40.4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

* '99년부터 '02년까지 175건, '03년 산활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515건 승인

< 사업재편계획 승인 건수 >

구분	산업활력법							산업혁신법					산경법			계
연도	'99~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
건수	175	88	108	79	38	22	23	30	35	35	22	8	15	9	3	690

□ 기업 규모별 이용 현황

○ 승인기업 중 334개사**(48.4%)**가 1,000인 미만, 356개사(51.6%)가 1,000인 이상 기업으로 집계

□ 업종별 이용 현황

○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(45.8%)로 승인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며, 유통업(11.7%), 서비스업(10.1%), 금융업(9.6%) 順으로 활용

□ 신규고용 증감 현황

○ '03년부터 '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231개사가 신규채용 목표 수립, 이 중 170개사가 70,071명 신규채용 진행(기업 당 평균 412명)

* 나머지 61개사는 사업재편이 진행중이거나 신규채용 결과 비공개로 확인 불가

□ 생산성 지표 향상 현황

○ '03년부터 '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집계

<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생산성 지표 평균상승률 >

생산성 지표	정 의	평균상승률
유형자산회전율	매출액/유형자산	88.4% (54개 기업)
자기자본이익률	당기순이익/자기자본	37.0% (53개 기업)
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	부가가치액/종업원 수	74.0% (78개 기업)

* 나머지 276개사는 사업재편이 진행중이거나 생산성 향상 결과 비공개로 확인 불가

□ 전반적인 평가(경산성, 경단련)

○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약 70%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치를 기록

○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'99년부터 「산업활력법」을 활용,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로 평가